

달성화석박물관 대관 이용수칙 및 허가조건

사용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조례 및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운영규정 및 협의 사항을 준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시작 및 종료시간을 준수바랍니다. (종료 10분전까지 정리 후 퇴실)
 - 사용시간은 장비의 출입과 설치준비부터 사용시설의 원상복구까지의 기간입니다.
2. 공익적 행사를 빙자한 각종 상행위, 정치활동, 상업목적의 행사, 포교활동에 수반되는 의식은 할 수 없습니다.
3. 시설물 사용 후 바닥 오염물 제거, 환경정리, 시설물 원상 복구하고 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4. 행사에 필요한 의자 및 탁자 등 부대시설 대여시 신청자가 설치 후 철거합니다.
5.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과 분리하여 공단에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아야하고, 음식물 폐수 및 폐기물은 당일 사용자가 수거하여 처리하거나 퇴가져 가져서 배출바랍니다.
6. 현수막, 포스터는 관계자 동의하에 지정된 곳에 부착가능하며, 유리문 또는 벽면 타카 사용은 제한합니다.
7. 흡연, 음주, 음식물, 취사 및 화기용품 반입 등을 금지합니다.
8. 특별한 설비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 사전 승인 및 협의 후 설치하여야합니다.
9. 행사시 지나친 소음 및 도가 넘는 행위로 박물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지않도록 유의 하여야합니다.
10. 물품의 보관, 관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도난, 분실,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11. 행사 참가자와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을 보호를 위해 안전요원을 사용자가 배치하여야 합니다.
(행사장 질서유지 안전요원 및 원활한 주차 흐름을 위한 주차요원 등)
12. 행사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 측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사전계획 및 조치하여야 합니다.
13. 사용기간 중 허가시설물 및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분실한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고 차후 복구비용 및 배상책임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4.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으며, 위 이용수칙에 위배되는 행위 시에는 입장을 금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나 그에 준하는 공공의 행사로 인하여 당 달성화석박물관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신청인(단체) :

(서명 또는 인)